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예외적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자동연장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9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자동연장(안 제17조제5항 신설) ····· 2

##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2. 4.

다. 회 부 일 : 2025. 2. 5.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자동연장(안 제17조제5항 신설)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 제17조제5항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정으로 허가·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하려는 것임.

| 현 행 | 이정문의원안 |
|---|---|
| 第17條(再許可 등) ①~④(생 략)<br><신 설> |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 나. 검토 의견

□ 법 제17조제1항[1]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제17조제2항[2]은 종합편성·

1) 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2) 제17조(재허가 등) ②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도전문PP와 홈쇼핑PP에 대한 재승인을 규정함.

○ 동 규정에 따른 재허가 대상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조 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이며, 재승인 대상은 동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보도전문PP, 홈쇼핑PP임.[3)]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재허가를 하고,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과기정통부장관이 재허가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PP는 방통위, 홈쇼핑PP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재승인을 함.

□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은 재허가 시한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4)]에 따르면 재허가·재승인은 유

---

3) **제9조(허가 · 승인 · 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전단 생략)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며, 법 시행령 제5조제3항[5] 및 제10조제2항[6]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는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한 만료 전에 재허가·재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기한 도과로 인한 무허가 방송문제가 지적됨.

○ 2024년 12월 31일에 허가가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는 KBS 1TV, MBC, EBS를 포함한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으로, 당시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인하여 재허가 심사 및 심의, 의결 등 관련 절

---

4)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방송법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6)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허가시한이 도과한 상태임.

- 방통위에 따르면, 2024년도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2024.6.12.)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기술심사 등 실무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2024년에도 발생한 바 있음. 당시에 재허가 대상은 34개사 141개 방송국으로 허가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방통위는 의결을 연기하였고, 2024년 1월 31일에 재허가를 소급하여 의결하였음.

○ 허가 등 처분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인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7] 등을 고려할 때, 재허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무허가 방송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허가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통해 이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

---

7)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유사 입법례>

| |
|---|
|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② (생 략)<br>**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u>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u>한 것으로 본다.**<br>④~⑥ (생 략) |

○ 이외에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등이 해당됨.

- 이는 안정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법령정비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적용 대상이나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나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산업융합 촉진법」 상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 |
|---|
| **제10조의6(임시허가)** ①~⑪ (생 략)<br>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br>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 또한, 현행법 제18조제5항[8]은 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해, 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허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시청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8)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 다만, 지상파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뿐 아니라,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나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방송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술적 차원의 「전파법」 제34조제1항[9]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국 허가에 있어서 통합되어 발급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허가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허가인 「전파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도과가 문제될 수 있으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과기부나 방통위의 "내부 사정 등"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내부 사정"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재허가·재승인은 사업자 및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수범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심의

9) **「방송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을 두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상규 상 방송사업자는 허가 유효기간 내에 심의결과가 나올 것을 신뢰하며, 이를 도과하는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귀책을 찾기 어려워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 입법례와 같이 “내부 사정 등”의 표현은 제외하고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및 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문언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통위**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는 방송법뿐 아니라 전파법[10]도 적용받는 부분은 감안하여 보완하고,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11]

○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재허

---

10) **「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방통위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 |
|---|
| ⑤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허가유효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가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말에도 2인 체제 하에서 검토시한의 촉박함으로 인해 재허가 시기가 약 한 달 연기된 사례가 있는 등 재허가 절차의 난항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방송사업자는 찬성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임.

- (JTBC, MBN, YTN, **연합뉴스TV : 찬성**) 방송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방송의 유지, 국민의 시청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TV조선, 채널A : 수정의견**)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사정'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방송법」의 관련 규정 취지나 재허가 심의 지연으로 받게 되는 방송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의 필요성, 개정취지에 공감하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와 내용으로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80호)」이 우리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으로, 이와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문 의 처 |
| --- |
| 02)6788-5226 |